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04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최은석 · 김태규 · 김상훈
이소희 · 김선교 · 서명옥
김기웅 · 김장겸 · 권영진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3.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업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u> <u>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2.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u> <u>3.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u>

